

제423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31일(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상정된 안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1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

(16시32분 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스케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16시33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3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당시 정부 측에서 제시한 의견은 3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읽으세요, 그 부분.

○전문위원 이화실 대통령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간 헌법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견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겠지만 이 경우 임시대리의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권위 시와 사고 시를 구별하여 권위된 경우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 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사고의 경우 그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되고 기본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견해와 권한대행자가 대신하는 권한의 행사는 직무의 수행으로 여기에는 상황에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 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 측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적정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기를 7일로 제한하고 7일이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 행사를 위해 수반될 수 있는 검토 내지 심사권을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임 재판관의 계속 직무 수행제도는 임기제를 전제로 후임자의 선임이 자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기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에 재판관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관이 정년에 달한 때 후임 재판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없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직무의 계속 수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전제로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장 기간을 한정할 것인지, 한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한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 김용호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이 세 가지의 가나다 안건에 대해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장님, 매 주말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하는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찬반 집회를 보면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찬성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많게는 서너 배씩 많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는 많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언론 보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언론 보도는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마 보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보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무슨 취지예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특별히 어느 집회가 더 많다 이런 언론을, 그런 것을……

○**유상범 위원** 매번 나옵니다. 매주 2배, 3배 이상 탄핵 반대집회가 많이 나옵니다. 참석하는 인원이 많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얘기합니다.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탄핵 사유의 80%에 해당하는 것이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탄핵의 동일성이 침해됐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각하를 하고 만일 필요하면 국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라는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했고, 그것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차장님 입장에서 보면 탄핵소추 사유에서, 두 가지잖아요. 비상계엄에 관한 위헌·위법 문제 또 하나는 내란죄 문제인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의 내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다 철회가 됐어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때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유의 80%가 내란을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재판에서는 내란죄는 사라지고 비상계엄만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핵심이 다 빠진 것 아니에요? 이거 완전 양꼬 없는 쪼개이지요. 이것이 탄핵 사유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판관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숙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미 차장님도 언론을 통해 지켜봤듯이 대체토론에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사안에서 다 얘기를 했고 이 법안에 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법안을 한번 보시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되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아까……

○**유상범 위원** 그렇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재판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굳이 갑자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대통령 지명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2명의 헌법재판관후보를 굳이 대행이 추천하는 규정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또 마흔혁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나면 임명 간주한다는 규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아니, 탄핵사건에 대해서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한다면, 지금 이 법들이 발의된 이유는 사실은 그게 선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의된 건데 그 전에 선고되면 굳이 이 법안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제기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아시지만 이게 예방 차원의 입법입니까, 특별하게 그 세 사람을 그냥 계속 근무시키려는 입법이지? 게다가 대행한테는 아예 임명권도 주지 않는데 예방 차원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지명 2명에 대해서 임명도 못 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현재가 선고만 하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는데 현재가 30여 일을 계속 평의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소추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증인 신청 상당수 기각하고 그다음에 증인 심리 시간까지 초시계로 재 가지고 시간 딱 할당하고 그래서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여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만큼 현재에서 신속하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한 전례가 없는 내용, 그것 인정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엄청나게 빨리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비판도 있었고, 증거법칙의 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제 평의 결과 가지고 결정해서 선고만 하면 끝나는 사안이에요. 늦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특정한 재판관들을 계속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유지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이 발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내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최근에도 평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상범 위원** 아니, 최소한 뭔가는, 여기 민주당 위원들도 다들 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고 온 언론이 현재가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양극단으로 나뉜, 정쟁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 사항, 국정의 어려움 또 외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빨리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재판관들도 분명히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재판관들 사이에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의견 일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래서 계속 오늘도 평의를 하셨고 아마 내일도 평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차장님, 이 법이 4월 18일이 지나면 쓸모없는 법안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날짜를 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3조에 의하면 아홉 분의 재판관이 있어야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이성윤 위원** 그게 재판의 완결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이성윤 위원** 완결체에 의해서 재판을 선고받는 것, 이게 국민들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한 얘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이성윤 위원** 일반 재판부에서, 합의부 재판부에 판사 한 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아홉 분의 재판관을 충원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한 적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성윤 위원**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이 법안이 그런 겁니다. 이 법이 발의된 때가 올해 1월 2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는 반드시 아홉 분이 채워져야 된다, 제가……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아니고요 2016년에도 소병훈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4년 이후에 20일 이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고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을 9인으로 구성하는 그 취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요.

2012년에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서한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니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해 가지고 요즘처럼 마흔여섯 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 바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2011년 7월에 퇴임하고 계속 임명이 안 되자 2012년 2월 달에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 1명의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 재판소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요즘처럼 마흔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국회에 서한을 보내 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보면 국회에는 임명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왜 행정부에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내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말로는 아홉 분이 꼭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국회에는 얘기를 해요, 편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한테 빨리 임명해 주시오라고 말 안 합니까? 더군다나 그것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재판으로써 벌써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그게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 그것 헌법재판소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현재 입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부 재판부가 세 분인데 한 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 한 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아니, 이런 말씀들도 못 하시면 차장님 아니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가 행정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 차장님, 지금 마흔혁 재판관 관련해서 2024년 12월 31일 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하고 벌써 네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저는 현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 2012년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에게 임명해 달라 얘기 안 합니까? 이게 헌법에 위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서영교 위원님께서 유럽 각국의 입법례를 말씀했습니다.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이성윤 위원** 독일 기본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2016년에도 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헌이 아니다예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임시적·잠정적으로 종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헌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 또 헌법이 이런 직무대행을 금지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임기 연장도 아니고 단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논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이성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 사태를 보면 이 사태를, 제가 발의한 것이

2025년 1월 2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힘 위원들께서는 이게 4월 18일에 맞춰서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1월 달에 제가 발의를 해서 반드시 9인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의견이 없다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당연히, 20년 넘게 지금 계속 9인 체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법에 보면 연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 상태는 반드시 법률이 해결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 판례를, 판결을 통해서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꼭 이 제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서울대로스쿨 윤진수 교수가 쓴 논문 혹시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분도 임기 만료 후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반드시 1소위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9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우선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현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이 지금 이때 논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임기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현재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마흔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저는 현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태껏 이런 탄핵심판이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현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금 논의하게 되면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항상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7일이 경과한 때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7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적격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7일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상 어떠한 검토도 없이…… 임명

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추천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형식적 행위로써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임명을 따로 규정한 것은 그것을 점검하고 부적격자를 걸러 내거나 임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한 번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7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전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도 7일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국무위원 모두를 차례로 전부 다, 국무위원이 1명도 없어질 때까지 다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부적격자를 걸러 내거나 그 어떤 행위를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7일간 행사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행위 개입 없이 경과하면, 즉 아무도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 정지시켜 놓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그냥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 개입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거나 부적격자로 걸러 내거나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7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는 그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가 있지 않으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매우 정치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이 헌법재판관 3명에 있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임명하는 지금 대한민국국회의 이 구도하에서는요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정당은 추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면 국회는 계속해서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그렇게 했고, 그런데 가처분 신청하니까 그다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요 단 며칠 사이에, 예를 들면 어떤 방송, 언론사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게 있으면 후임 임명 안 하고 7인 체제를 붕괴시켜서 6인 체제로 만들고 일주일, 2주일만 지나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명 안 해도 전임자, 우리가 선호하는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일만 버티자, 3주일만 버티자 안 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어야지만 최대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예방할 수 있지……

현재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왔고 국회도 현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면 이런 여지를 열어 두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 국회는 계속해서 그런 꼼수를 써서 악용하고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려고 하는 게 뭐니까?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니까? 그 두 사람은 유지하고, 그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걸 막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 두 사람은 임기 끝나도 가고. 그리고 설령 18일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탄핵을 인용시켜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2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 그때까지 임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 그 2명을 임명하겠다. 지금 이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2명은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 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은 끝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고 지금 정부에서 임명하려고 하는 2명은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객관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가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저는 그런 악용의 가능성을 없애려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6년이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장동혁 위원이 출탄핵을 전제로 한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동혁 위원 충분히……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

○장동혁 위원 초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면 당론입니까? 그 당은 그런 모양이에요.

○장동혁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발의자이신 이성윤 의원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는 이 간주 규정은 임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제하는 얘기지요?

○이성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법조문상으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네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헌법재판소 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기다린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서영교 위원 1인 시위만 가능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저희는 100만이 넘는 사람이 광화문에 모였거든요.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이지만 헌법재판소 근처까지 가지 않았던 거지요. 제가 직접 걸어서 거기 앞까지 갔는데 안국역까지만 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그 앞에 기자회견을 하러 갔더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오래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콩나물시루 같더라고요. 저희가 몇 명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눈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앞에 정말 콩나물시루에…… 그런데 그냥 시위를 하면 좋은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위도 안 되고 집회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욕설을 해요?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욕설 들어 보셨어요? 헌법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질 욕설을 하고 쌍욕을 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으면 품위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 욕설을 하고 그리고 부부젤라를 거기서 불더구먼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부젤라를 얼마나 불어 대는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거지요. 너무 무섭게 협박하던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있더구먼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콩나물시루에서 외쳐 대고 부부젤라 불고 쌍욕하고 재판관 이름 불러서 욕하고 가족 욕하고 그리고 이 욕한 거를 전부 다 또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로 댓글 쓰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연속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돌아오면서 그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저하고 박희승 위원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박희승 위원이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벽이라도 쳐 줘라. 그리고 저도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날 한 번 더 가 보자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계란은 터졌고요 밑에 계란이 뜰망뜰망한 게 있더라고요. 개는 삶은 계란이더라고요. 이게 눈을 맞았으면 어떡했겠으며 그게 돌이었으면 어떡했겠으며 그리고 그게 다른 흉기였으면 어떡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는 안 무서울까요? 저는 가서 욕설을 들었어요. 제가 법적 조치 취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분들은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고소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하고, 탄핵 파면을 인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극우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탄핵을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꼭 막아 주셔야 돼요. 저희가 기본은 해 놨고 이제 차벽까지 쳐 놓지 않았습니까? 좀 살 만하지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서영교 위원 차벽도 치고 다 쳤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서 봤으면 막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우리가 같이 1인 시위도 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거기를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거 다 막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문형배 소장은 음란 문형배라고 그러더구먼요. 그리고 손가락질 욕을 하고 그 자식과 가족을 욕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이분이 위축이 됐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철수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지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그거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극우라고 할 만한, 뭐 다 간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유튜버들이 가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빌라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짓을 하는 겁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특검으로 수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 야구방망이를 든 극우 선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제가 법적 조치 취하고 요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법적 조치 취했어요. 그 사람 감옥 갔어요. 그랬다가 잠깐 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감옥 갔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위축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6년에 박용진·소병훈 의원이 이 법안을 냈던데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그 당시에 법적 검토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서가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읽었고요.

두 번째, 이 법안은 이성윤 의원님도 발의했지만 복기왕 의원도 발의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복기왕 의원은 아마 이 탄핵이 있기 전에 발의했을 거예요. 훨씬 전에 발의해서 이 법안은…… 제가 보다 보니까 법적 불비예요.

영국과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일본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디의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온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오스트리아, 독일 그런 쪽……

○**서영교 위원** 오스트리아, 독일 등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독일,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까지는 전부 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있던 헌법재판관이 정년 퇴직을 했건 아니면 임기가 끝났건 후임이 오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원의 숫자를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독일 사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터키, 볼리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등이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면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숫자가 9명이다, 그러면 예비 헌법재판관으로 6명을 둡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빈자리가 생기면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 예비재판관이 그 재판관을 대신합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예비재판관 제도도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용은 어디에서 검토된 거냐면 앞에 내용은 지난번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겁니다. 국회 안의 검토의견서고 뒤에 예비재판관 제도 등과 관련한 것은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불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윤석열 탄핵 인용이 이렇게 길어지리라 아무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불비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4월 18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퇴임하면서 6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악용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해 이것을 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그동안 발언하고 변론 기일에서 주도해 나가는 그 모습과 용어들, 발언들은 충분히 이것은 과연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뺏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란죄를 사법적인 영역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내용에서 빼서 사법적 영역으로 보내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내용은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정형식 재판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예요. 정형식 재판관이 ‘이 내용은 사법적인 형사재판의 영역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 5개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 거기에 내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은 저희가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법안은 그동안 불비했던 내용 이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흔들어 댈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도대체 누가 이것이 불법 계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불법 계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이제 줄여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에 사과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돌리려고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찬성해서 불비했던 입법 내용을 보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세계 각국의 여러 입법례, 특히 예비재판관 제도를 소개해 주신 점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장님,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는 다 인정하시는 바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균택 위원**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그 세 분의 공통점이, 인사와 관련된 공통점이 법이 명령해도 안 듣고 법에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안 듣고 또 어떤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차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좀 적극적으로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원 판결문이 힘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혼자 이론만 잔뜩 써 놓고 남이 따르든 말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법관의 권위도 인정되는 거고 또 정의도 실현되는 것인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선언만 해 놓고 따르든 말든 그걸 무시를 해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하려다가 서영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서 자세히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앞에 보니까 난장판이더군요. 정말 그렇게 저질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정도로 현재를 향해서 험한 욕설을 해 대고 매일 마이크를 들고 계속 기자회견을 한다고 10여 명 모여서 소란을 피워 대고, 오늘 보니까 갑자기 조용하던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국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거기에 협조해 주느라고 조용조용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헌법재판관님들 사진에다가 쌍욕을 써 놓고 얼굴에다가 이상한 색칠까지 다 해서 모독을 주고 그러던데, 그 인도를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균택 위원** 어떻게 그걸 보면서 안 느껴지시던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희도 채증은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채증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걸어가면 왜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느냐고 그래요. 그 길이 자기 건 줄 아나 봐요. 1인 시위도 와서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가고, 새벽에 혼자 있으면 새벽까지 나타나서 그런 저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본거지로 삼아 가지고.

정말 이런 무법지대가 없는데 왜 현재는 그런 것을 가만두고 있는 겁니까? 현재 말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고 헌법재판소나 재판관들을 모독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 가지고 현재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제발 권위를 인정받고 존재 이유를 인정받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노력하는 측면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앞부분, 앞쪽은 아까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약화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약화된 게 그 정도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균택 위원**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찰한테 자꾸 전화하시면, 차장님이 직접 않더라도 총무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자꾸 전화하시면 경찰도 그때는 말을 듣는데 하는 등 마는 등 한번 그냥 얘기해 보듯이 신경

좀 써 달라는 말 한마디 하고 말아 버리면 경찰도 귀찮아서 놔둬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따르지 않는 최상목, 이제는 한덕수, 정말 경고도 좀 하시고…… 대변인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러라고 대변인이 있는 것이지. 정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균택 위원** 지금 너무 능멸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차장님도 애 많이 쓰시겠지만 지금 인도, 그러니까 현재 건너편은 차벽이 세워져서 많이 치워졌던 것 같은데 인도 쪽에는 아직도 좀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쪽으로?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쪽 지금 다 진공상태입니다.

○**박희승 위원** 거기도 이제 다 뺐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언제 치웠나요? 얼마 안 됐어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쪽은 지난주부터 거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요, 말고 인도 쪽 민원실 앞에 거기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민원실 앞쪽에 거의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사람들 거기에서 108배 기도도 하고 앉아 있고 웅얼웅얼거리고……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기도하고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는 1인 시위 한두 분, 몇 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출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제가 현재 가서 보면, 지금 현재 건물에 무궁화가 아홉 개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희승 위원** 그만큼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홉 명으로 구성된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헌법에 대통령 임명 셋 그다음에 대법원 추천 셋, 국회 추천 셋, 이렇게 정당성을 구성해서 아홉 분이 현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섯 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분이 결원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희승 위원** 그런데도, 현재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까지 했는데도 지금 국회 합의를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장동혁 위원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물론 대통령은 현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추천해서 하는 거지만 국회는 당연히 다수당이 있는 것이고, 다수당이 당연히 세 명 중에 두 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뭐 세 명까지는 안 하지만—그런데 야당에서 두 명 추천한 것 가지고 끝까지 지금 한 분을 임명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한 명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저는 아홉 분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박희승 위원**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리고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관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문이?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박희승 위원** 그런데 지금 대놓고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계속 국회에다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간 사람을 합의해서 다시 갖고 오라, 이게 무슨 오만입니까? 더구나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 주제에. 그것 자체도 지금 헌법적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오만을 떨고 있는데 현재가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라도 말이지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아홉 명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여덟 명이 결론을 내면 또 분란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든?

더구나 지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은 민주당만 된 게 아닙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지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당 대 당으로 이렇게 여당, 야당 서로 큰 싸움이 붙었는데 현재가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아홉 명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대행이 임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급적 탄핵을 자제하면서, 그래도 현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도 했으니까 임시지위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는데 뭔가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만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시민들이 잠도 못 자고, 계엄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계속 현재의 결정을 쳐다보고 있고 또 잠을 못 이루니까 밤마다 광화문 시위에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소비지출을 안 해서 중소, 소상공인들 매출이 반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통계로 잡힌 것도 한 20만 이상이 폐업을 하고 감축을 했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나고 있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게 현재인데 현재가 지금 답이 없어요.

아까 대변인 말씀도 했지만 국민들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계속 현재가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평의를 했으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이번에는 1항에 대한 평의가 있었다, 1항에 대한 평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반대했다 알려 줘야지 계속 평의를 한다는데 한 시간 하는지 두 시간 하는지 하루 내 하는지 밤을 새워서 하는지…… 아니, 제가 피켓 시위하러 가서 보니까 9시에 대부분 다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가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겠어요?

헌법이 만들어질 때 혁명이라든지 정말 국민적 합의 때문에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엄청난 6·10 항쟁 통해서?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일을 하셔야 되고, 일단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국무위원들이든 재판관이든 학자든 헌법 체제를 지키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면도 하고 그래야지 ‘헌법에 위반됐는데 과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헌법을 위반한 것만큼 더 위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명령·규칙도 아니고?

현재가 지금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하니까 도대체 이 재판관들이 헌법 수호 의지

가 있는 것인지, 이렇다면 대법원에서 하지 현재를 왜 뒤 가지고 비싼 월급 들여 가면서 또 엄청난 예산 들여 가면서…… 존재 의의가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출발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 수호를 못 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자꾸 잃어 가면…… 갈수록 결론이 늦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민란 일어납니다, 분명히.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것을?

아니, 나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가서 하는 시늉만 하면 되지 뭐…… 솔직히 저도 재판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이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좌고우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관이 되면 판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 질서 수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대한 책무를 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민이 애간장이 타서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니, 더구나 그 영예스러운 헌법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뭘 더…… 대통령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관직에서 뭘 더 바라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헌법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일을 하셔야지.

아니, 청문회 때는 말이지 선서도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 견해를 밝히신 분들이 정작 일을 할 때는 자기 사리사욕을 만약에 앞세운다면 이것은 너무…… 그 자체가 지금 탄핵 사유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서 비장한 각오로, 보여 주는 것도 매일 24시간 근무한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주말에라도 나와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야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들려오는 소문이 그래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본 것은 아니지만 주말이면 경조사도 가고 어디 운동 약속도 하고, 더구나 내가 눈으로 목격한 건 9시 무렵에 출근하는 걸 봤으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지역구 가면 지역민들 달래고 이러면서 다들…… 국회의원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지만 시민들도 매일 광화문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면 거기서 동행해서 걸어가면서 탄핵을 외치고…… 빨리 결론을, 답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빨리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발 부디 결론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차장님,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권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호** 예.

○**주진우 위원** 이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 법안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임기가 달라지고 마치는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헌법상 위상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서 결국 현재의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권위를 살

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요.

이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항상 위헌 논란을 가져왔었고 지금 전문위원들 의견에 의하더라도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아까 9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주진우 위원** 그 논리대로 위헌성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권한대행도 조속히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 결정은 국회 추천 뜻에 대해서 현재가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나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에 있어서 효력이나 자격요건이나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대로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라고 의무를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후임자에 대해서도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후임자를 선정 못하도록 한 것이 역설적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정략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 현안이 많은데 너무 이 법안 딱 두 개만 오늘 시간을 내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하는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인 시점에 정략적인 법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거나 찬성을 하면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객관성을 완전히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윤 의원님 안의 6조 2항을 놓고 보면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아까 제가 장동혁 위원님 질의 다음에 멘트를 했듯이 혹시 우려가 있는 출탄핵이라든지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결의한 그런 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돼서 전제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7일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아마 이런 것을 상정하신 말씀 같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을 간주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 지적 같은데 아까 제가 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성윤 의원님께 질문했듯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은 그 사람을, 즉 국회 선출 뜻의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지요. 그렇지요, 차장님?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이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측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남겼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권한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분명하지요.

그다음에 임기 연장에 관한 이성윤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차장님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지금의 사태가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소위 내란 행위로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그 사태가 원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 거기에는 일부 여당 의원도 참여를 했고 13차례, 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 11차례라는 그리고 양쪽 다를 포함하면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총 19명의 증인을 신문한 그 결과로써의, 현재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지나도록 수차례의 패턴이 동일한 평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에 관한, 오늘조차도 선고에 관한 예측이 불허되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차장님 그건 이해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더더군다나 돌아오는 18일이면 문형배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현재의 여덟 분에서 여섯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사후에 벌어질, 선고가 되지 않고 6명으로 재판관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소위 심판정족수, 즉 23조 1항의 7인을 채우지 못하는 소위 헌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는 거지요? 예측으로서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더더군다나 양 진영으로 갈린 국민들의 분열이 심각하고 그랬을 때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계를 대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명령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헌법기관들, 대표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심각하고 헌법재판소의 소위 대기관 기속력·규범력이라는 게 형편 없이 홀대되고 무시되는 그런 형국에 와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위기 상태만 반영한 법안이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대표발의 한 이성윤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결원됨으로써 한 분 한 분이 소위 헌법 수호적 책무를, 기본권 수호적 책무를 이행하는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재판관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이라는 업무가 지장되고 그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반론적인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런 근원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헌법 112조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상법상의 소위 사적 이해관계, 주식회사 제도나 여러 제도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 임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 그 회사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임기 계속이 된다라는 법리는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이 헌법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연임은 물론이지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헌법재판의 계속성을 위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해석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몇 년입니까? 6년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법률로 연임하면 12년입니다. 헌법에 이미 헌법재판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로 연임 조항을 뒀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태, 헌법 공백 상태, 헌법 위기 상태에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업무의 일시적 계속성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 그게 왜 위헌입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의 헌법 위기 사태에서, 내란 사태에서 일부 학자들이 합헌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긴급성과 중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 법률은 저는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그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전숙 방통위원장 때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의 근거 법입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헌법재판관들께서 스스로 임기가 내일모레 만료될 당시의 소장, 두 분의 재판관, 세 분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되는 것을 걱정해서 가처분으로 뭐라 그랬냐? 소위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심각한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설시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엄연히 명문으로 23조 1항에 7인의 심판정족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인만으로 심리정족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증거조사와 변론과 사건을 숙성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과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소위 긴급 처분으로서, 가처분으로서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랑 지금의 헌법적 위기 상태 또는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로서, 영구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잠시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될 수인의무, 복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 7일이면 충분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심사하는 데, 자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얼마든지 심사하기에 충분한 7일을 보장한 뒤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장은 두 개의 법안, 김용민 의원안과 이성윤 의원님 안의 통과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법리적인……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그 전에 위원장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설명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우리 회의 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이 오늘은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는 말씀과 지금 하는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크네요. 한 시간 반 만에 그렇게 많이 변화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말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위원회입니다. 1소위원회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의원님 안 부칙 2조(적용례) 6조 2항만 보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불만이 있더라도 이따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불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2조(적용례)에 1항으로 지금 조항을 두고요, 이성윤 의원님의 6조 2항. 그리고 2항에 ‘7조 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게도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위원장이 수정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유상범 위원** 진정소급입법까지 집어넣는구나. 혼자 다 하세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직무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일반론으로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소급효까지 적용하는 게 무슨 일반론입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위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장동혁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조 2항도 다른 뜻이 없다면 적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아니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이라고 명시적으로 넣으십시오. 그런데 그걸 넣지 않는 것은 말로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냥 경과하면 임명된 것으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을 하세요.

○**장동혁 위원**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7일을 경과한 때 적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 없이 6조 2항을 고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아니하고 7일을 경과한 때는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7일이 경과하면 그날로부터 임명된 걸로 본다라고 고치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 재판관 두 명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임기 끝나고 이 법 통과되고 재의 요구하다 보면 결국은 20일 지나갈 건데 18일 지나가고 나서 집에 갔더라도 집에서 다시 와 가지

고 직무 수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적어도 법조인이시면?

○**유상범 위원** 분명히 부칙을 그렇게 개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발언을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개정을 하시는 걸 보면서……

○**소위원장 박범계** 앉아서 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앉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딱 한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렇지 불과 2시간 전에 위원장도 저한테 와서 ‘오늘 의결 안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의결 안 합니다’, 통보했지요?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장 신문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무리 말의 가치가 떨어져도 2시간 만에 바꿀 얘기를 뭐 하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의 말의 가치고 말의 힘이고 말의 신뢰입니다.

어차피 일방 통과시킬 건 예상을 했어요,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러나 2시간 전에 그 정도 얘기했으면 최소한 내일 아침에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4선 의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2시간 만에 바꿀 거면 차라리 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합니다’ 그렇게.

○**서영교 위원** 소위 위원들이……

○**유상범 위원**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지금 내가 강력히 요구했어요.

○**유상범 위원** 예, 알았어요. 하세요.

○**이성윤 위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시급하다.

○**서영교 위원** 내가 강력히 요구했어요.

○**유상범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서영교 위원** 뭐가 부끄러워요?

○**이성윤 위원** 뭐가 부끄러워요, 위기 상황인데, 초비상 상황인데?

○**서영교 위원**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김용민 의원안 6조 1항 단서도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 중에 대통령 고유 몫의 임명권, 고유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따른 입법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도 하고요.

다만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즉,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국회와 동일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 지명 몫에서도 유추해석을 해 보면 같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책무, 임명 의무를 저는 판시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안에 만들어서 그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특별한 무리나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출탄핵을 전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을 간주하는 조항, 이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대통령의 임명 의무와 같은 선상에 있는 규정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문형배 재판소장직무대행과 그리고 이미 선 재판관에 대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법이 어쩌면 상정할지도 모르는 4월 18일에도 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위기 상태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이고 장본인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기간 만료로 인한 퇴임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하는 경우 위기 상태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를 법률적으로 커버하는 그러한 부칙 조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7조 3항에 대해서 현재 6조 2항과 똑같이 부칙 조항에 적용례를 두기로 한다는 것이 제 수정의견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에 보면, 2조(적용례) 1항에 보면 ‘6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 임명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박범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바깥에 체크 좀 하느라고.

○**이성윤 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마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범계** 어디요? 어느 부분?

○**이성윤 위원** 부칙 2조(적용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조 1항 ‘제6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로서 임명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어느 부분이지요? 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

○**이성윤 위원** 임명되지 아니한 후보자.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성윤 위원** 충분한 것 같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제가 보기애.

○**서영교 위원** 이 법으로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그 2항만 하나 더 두면 될 것 같아요.

‘7조 3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퇴장하셔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으로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시행 직전’을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는’ 이렇게 바꾸는……

○소위원장 박범계 전체회의가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 정도……

○서영교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소위원장 박범계 참고로 내일 전체회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이성윤 위원 자구 수정 권한도 위임해 달라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건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균택 박범계 박희승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설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